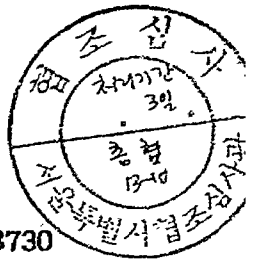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50-8716-7/ 전송 750-8730
 처리부서:주택개발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 별관2층)담당:유철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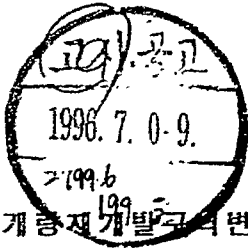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주개 58531 - (582

시행일자 : 1996. 7. 10 .

(경유)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 법무담당관 <i>심사관</i>
주택개발과장	전결	
개발 2 계장	<i>주</i>	
기안	유철중	
		협조

제목 수유제2주택개발재개발구역변경(단순면적정정) 및 사업계획변경결정

1. 건설부고시 제1994-234호('94.7.8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05호('95.11.11)로 구역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0호('96.2.9)로 사업계획결정된 주택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으로 부터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결정 요청이 있어 내용검토한바 가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단순면적정정을 위한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사항으로서

2. 도시재개발법 제4조(재개발구역의 지정) 및 도시계획법 제12조(도시계획의 결정)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(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)의 규정에 의거 주택개발재개발구역변경 및 사업계획변경결정 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(고시)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2조(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)규정에 따라 불임(고시안)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불임 : 고시(안)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수유제2주택개발재개발구역변경(단순면적정정) 및 사업계획변경결정

다. 법규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

같은법시행령 제12조

. 불임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유철중

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: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: 주택관리과장

제목 : 수유제2주택개량제개발구역변경(단순면적정정) 및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1994-234호('94.7.8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05호('95.11.11)로 구역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0호('96.2.9)로 사업계획결정된 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변경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.붙임 : . 고시문 사본 1부.

. 사업계획변경결정 도면 1부(생략) 끝.

서울특별시

(제 4 안)

수신 : 강북구청장

참조 : 주택과장

제목 : 수유제2주택개량제개발구역변경(단순면적정정) 및 사업계획변경결정

1. 귀 구 주택 58531- 1956호('96.6.28)와 관련입니다.

2. 위 대호로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변경결정 요청한 수유제2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구역변경(면적정정) 및 사업계획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내용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관계부서에 알리어 도시계획관련 업무 이행에 착오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

.붙임 : . 고시문 사본 1부.

. 사업계획변경결정 도면 1부(생략) 끝.

서울특별시

(제 5 안)

수신 : 받는곳참조

제목 : 수유제2주택개량제개발구역변경(단순면적정정)및 사업계획변경결정 통보

1.우리시 수유제2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변경(단순면적정정) 및 사업계획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.붙임 : . 고시문 사본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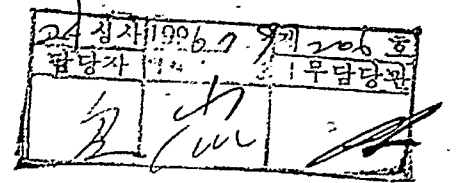
. 사업계획변경결정 도면 1부(생략) 끝.

주 택 개 량 과 장

.받는곳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 호



수유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(단순면적정정) 및 사업계획변경결정

1. 건설부고시 제1994-234호('94.7.8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05호('95.11.11)로 구역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0호('96.2.9)로 사업계획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 및 사업계획변경결정 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강북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6년 7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수유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

나.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강북구 수유동 260 번지일대

당초 : 28,799㎡, 변경 : 28,837㎡(증: 58㎡)

*구역변경결정도면 : 생략(단순면적정정)

다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:

(가) 공공공지결정조서

구 분	시설의종류	시설의구분	위 치	면 적 (㎡)		비 고
				당 초	변 경	
	공공공지	공공공지(1)	수유동 260- 86	141	188	증47
		공공공지(2)	수유동 260- 78	208	194	감14
		공공공지(3)	수유동 260- 27	12	14	증2
		공공공지(4)	수유동 260- 28	7	6	감1

*공공공지변경결정도면 : 생략(단순면적정정)

2. 건축시설계획결정(변경)조서

구분	획 지		건축 구분	건폐율	용적율	층 수 (높 이)	연면적	건축시설주된용도
	구분	면적(㎡)						
당초	택지 1	20,944.5	신축	24%이하	265%이하	18층이하 (60M이하)	86,000	공동주택(조합원 및 일반분양아파트)및 부대복리시설
변경		21,181						
당초	택지 1-1	736.4	신축	24%이하	265%이하	18층이하	40	공동주택부대복리시 설(주민운동시설)
변경		716		7%이하	7%이하	1층이하 (5M이하)		
당초	택지 2	3,494.1	신축	22%이하	245%이하	18층이하 (57M이하)	13,500	공동주택(공공임대 아파트)및 부대복리 시설
변경		3,446						
당초	택지 3	434.6	신축	건축법규에 의함				동사무소
변경		649						

5. 사업시행예정시기 : 1996.10.1 ~ 1999.5.31

**수유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
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신청서**

1996. 6.

수유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추진위원회

수유제2구역 사업계획변경결정현황

1. 사업명 : 수유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사업

2. 변경결정현황

(단위 : M²)

구역명	위치	구역면적			비고
		당초	변경	증감	
수유제2구역	강북구 수유2동 260번지 일대	28,779	28,837	+ 58	

3. 변경사유

- 본 구역의 현황 및 지구계 구분할 측량에 의한 단순면적정정 사유가 발생하여
도면변경없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함.

수유제2구역 사업계획변경결정조서

1. 재개발 사업계획변경결정조서

가. 계획대상

1)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수유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사업

2) 구 역 위 치 :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260번지 일대

3) 계 획 면 적

{	당 초 : 28,779M ² (8,705. ⁶⁰ 평)
	변 경 : 28,837M ² (8,723. ¹⁴ 평)
	증 감 : + 58M ² (17. ⁵⁴ 평)

4) 정비계획대상 건축물 : 204동
(무허가건물 6동 포함)

나. 사업계획방향 - 변경없음

다. 사업계획변경결정조서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M ²)		비 율(%)		비 고
		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	
용도지역	일반주거지역	28,779	28,837	100	100	단순면적정정
용도지구	주차장정비지구	28,779	28,837	100	100	단순면적정정
	미 관 지 구	800	800	2. ⁷³	2. ⁷³	
공공시설	소 계 (가)	2,942. ⁶⁷	2,845. ⁷³	10. ²³	9. ⁸⁶	단순면적정정
	도 로	2,571. ⁷³	2,443. ⁷³	8. ⁹⁴	8. ⁴⁷	
	공 공 공 지	370. ⁹⁴	402. ⁰⁰	1. ²⁹	1. ³⁹	
택 지	소 계 (나)	25,836. ³³	25,992. ²⁷	89. ¹¹	90. ¹⁴	단순면적정정
	택 지 I	20,944. ³³	21,181. ²⁷	72. ¹³	73. ⁴⁶	
	택 지 I-1	736. ⁴⁶	716. ²⁷	2. ²⁶	2. ⁴⁸	
	택 지 II	3,494. ¹³	3,446. ²⁷	12. ¹⁴	11. ³⁵	
	택 지 III	661. ³⁰	649. ²⁷	2. ²⁹	2. ²⁹	
	계 (가+나)	28,779	28,837	100	100	단순면적정정

2) 공공시설의 설치, 정비 계획

- ① 도로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.
- ② 공공공지변경결정조서

구분	시설의 종류	시설의 구분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	당 초	변 경	증 감	
변 경	공공공지	공공공지(1)	수유동 260 - 86	141. ⁹⁸	188. ¹¹	+ 46. ¹²	단순면적정정
		공공공지(2)	수유동 260 - 78	208. ⁵⁹	194. ¹¹	- 14. ⁵⁹	
		공공공지(3)	수유동 260 - 27	12. ⁴⁸	14. ¹¹	+ 1. ⁵²	
		공공공지(4)	수유동 259 - 28	7. ⁸⁷	6. ¹¹	- 1. ⁸⁷	

3) 건축물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결정(변경)조서

- ① 기존건축물 정비계획

구역	구분	획지구분	위 치	면 적(M ²)			정 비 구 분			
				당 초	변 경	증 감	대 상	철거후 신축	철 거	존 치
수유제 2구역	변 경	택지 I	강북구수유동 260-58 일대	20,944. ³⁸	21,181. ¹¹	+ 236. ⁴²	204 동	아파트 및 부대시설 상가 관리 및 노인정 운동시설	204 동	
		택지 I-1	강북구수유동 246-1 일대	736. ⁴⁶	716. ¹¹	- 20. ⁴⁶				
		택지 II	강북구수유동 247-3 일대	3,494. ¹³	3,446. ¹¹	- 48. ¹³				
		택지 III	강북구수유동 257-72 일대	661. ¹⁶	649. ¹¹	- 12. ¹⁶				

㉔ 건축시설계획

구역	구분	획지		건축구분	건폐율	용적율	층수 (높이:M)	연면적 (M ²)	건축시설주된 용도
		구분	면적(M ²)						
수유 제2구역	당초	택지 (1)	20,944. ^보	신축	24% 이하	265% 이하	18층이하 (59)	85,595. ^보	공동주택(조합원및 일반분양 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	변경		21,181. ^우						
	당초	택지 (1-1)	736. ⁴⁰	신축	7% 이하	7% 이하	1층이하 (5)	36. ⁶³	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(주민운동시설)
	변경		716. ^우						
	당초	택지 (II)	3,494. ¹⁰	신축	22% 이하	245% 이하	18층이하 (56.2)	13,324. ¹⁶	공동주택(공공임대 아파트)및 부대복리시설
	변경		3,446. ^우						
	당초	택지 (III)	434. ^우	신축	건축법규에 의함				동사무소
	변경		649. ^우						

4) 사업시행예정시기 : 1996. 10. 1. - 1999. 5. 31.

- * 별첨 : 1. 측량성과도 1부
- 2. 토지 조서 1부